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조)

4.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의 업무)</p> <p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업무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국선번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81